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보윤의원·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93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6.

발 의 자:최보윤·서미화·이수진

김선교 • 서천호 • 윤종오

최수진 · 남인순 · 민형배

백혜련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노동조합의 조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, 종교, 성별, 연령, 신체적 조건, 고용형태,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.

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은 노동조합이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,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에서도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것을 명시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장애인의 노동조합 활동 차별 금지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장애 등 신체적 조건에 따라 차별을 받 아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단결권 등 노동 권이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조).

법률 제 호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 중 "신체적 조건"을 "장애 등 신체적 조건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9條(차별대우의 금지) 勞動組合	第9條(차별대우의 금지)
의 組合員은 어떠한 경우에도	
인종, 종교, 성별, 연령, <u>신체적</u>	<u>장</u> 애
조건, 고용형태, 정당 또는 신	<u>등 신체적 조건</u>
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	
아니한다.	